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6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6. 7. 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2026. 7. 22.) 상정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2026. 8.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26. 8.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임의자의원)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 음